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1월 20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성전환 뉴욕주민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새 규제의 금일 발효 발표

2015년 10월에 Cuomo 지사는 성 정체성, 성전환자 지위 또는 성 정체성 불쾌증에 근거한 **희롱 및 차별을 금지하는 전주적 규제를 발표한 전국 최초의 지사가 되었습니다**

새 규정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인권과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과 희롱을 금지하는 새 규제를 채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오늘 발효되며 성전환자들이 주의 인권법에 의거 보호됨을 단언합니다. 모든 공공 및 민간 고용주, 주택 제공자, 업소, 채권자 및 기타의 사람들은 성전환자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에서는 어디서든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Cuomo 지사는 작년 10월에 이러한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성 정체성, 성전환자 지위 또는 성 정체성 불쾌증에 근거한 희롱 및 차별을 금지하는 전주적 규정을 발행한 최초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주가 성전환자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히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든 희롱이나 차별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데 성전환자 커뮤니티는 너무 오랫동안 2등 지위에 처해져 왔습니다. 이는 기본 정의의 문제인데 본인은 뉴욕주가 계속해서 그 일을 인도하여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는 인권법 규정에 의거 성전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온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뉴욕은 차별금지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1945년에 제정된 이 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희롱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법원 또는 뉴욕주 인권과에 무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뉴욕주의 지역사무소에서 즉시 조사에 들어갑니다.

주 법률에 의거 인권과는 인권법을 해석하는 규정을 반포할 법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인권과가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인권법 진정을 보호되는 성 및 장애 카테고리를 근거로 수락하고 처리할 것임을 확인하며,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성전환자 불법 차별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권과가 희롱 또는 차별이 발생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과 커미셔너는 공청회를 통해서 사건을 판결하고, 일자리, 주택 또는 다른 수당,
임금인상 및 소급인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 민사상 벌과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는 필요할 경우 정책 변경과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민사상 벌과금은 최고 50,000달러 또는 최고 100,000달러가
될 수 있으며, 연방법에서와는 달리 개인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은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